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및 해당 시·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 및 같은 영 제36조제3항의 소방장비의 점검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3조(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무인방수차
2. 조명배연차
3. 구급차
4. 검사 대행이 필요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장비

제4조(소방장비 관련 학과 인정 범위) 영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른 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의 소방장비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자동차공학과(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를 포함한다)
3.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

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부터 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5조(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39조제3호에 따른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장비정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기준

(제5조 관련)

1. 검사설비

검사설비 및 기기명	규격	수량	교정대상
줄자	- 100 m 이상	1개	
버니어캘리퍼스	- 0 ~ 150 mm 이상 측정 가능한 것 (최소눈금단위 : 0.05 mm 이하)	1개	○
추	- 총중량 300 kg	1개	
기압계	- 대기압측정 가능할 것	1개	
피토관	- 2 MPa 이상 가능할 것	1개	
진공계	- 0 ~ 760 mmHg 이상	1개	
디지털멀티메타	- AC, DC, V, mA, Ω 측정 가능한 것	1대	○
수압시험기	- 펌프 송수압력 1.5배	1조	
흡수관	- 75 A, 100 A, 150 A	필요수	
토크메타	- 성능 효율측정이 가능	1대	○
영상탐상기	- 구조물 확인용	1대	
도막측정기	- 도장상태 확인용	1대	
나사게이지	- 소방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 (링게이지 65 A, 75 A, 100 A, 플럭게이지 65 A)	1조	○
저수조	- 용량 20 m ³ 이상	1개	
비파괴탐상기	- 용접상태 점검가능	1대	

2. 교육설비

교육 설비명	규 격	용 도	수 량
옥외주행교육장	- 도로환경별 주행 코스 • 곡선주행구간 50 m • 경사로 등판구간 20 m • 빗길 운행구간 20 m • 편경사로 운행구간 50 m • 횡단보도 - 주차 등 기본 운전 코스(대형차 기준) • 후진주차코스 • 구불구불한 코스 • 방향전환 코스	운전실습	1개소 이상
교육시설	- 훈련탑 높이 15 m 이상 - 강의실 150 m² 이상 - 책상 20개 이상 - 의자 20개 이상	조작 이론 이론 이론	1개소 이상 1개소 이상 20개 이상 20개 이상
소방차량	- 소방고가차 (사다리차는 33 m급 이상, 굴절차는 27 m급 이상) - 소형사다리차 (15 m급 이상) - 소방화학차 (중형급 이상) - 소방물탱크차 (중형급 이상)	조작 또는 운전실습	각 1대 이상

3. 점검설비

점검 기기명	규격	용도	수량	교정대상
버니어캘리퍼스	0 ~ 200 mm (최소눈금단위 0.01 mm 이하)	길이 측정	1	o
마이크로미터	0 ~ 25 mm (최소눈금단위 0.001 mm 이하)	길이 측정	1	o
와이어 탐상기	측정범위 : 6 ~ 24 mm 정확도 : 10 mm / 100 m 이하	와이어 비파괴 검사	1	
멀티미터	1,000 V, 10 A, 30 MΩ	전압, 전류, 저항 측정	1	o
유량계	유량 : 110 ~ 550 LPM 압력 : 1 ~ 25 kg/cm ²	유량 측정	1	o
열화상 카메라	- 20 °C ~ 350 °C	온도 측정	1	o
경사계	경사정밀도 0.05' 수평정밀도 0.029'	각도 측정	1	o
다이얼게이지	0 ~ 50 mm 정밀도 0.01 mm	길이 측정	1	o
휴대용전자제어진단기	상용차	차량 전자제어 진단	1	
토크렌치	400 ~ 2,000 kgf · cm	토크 측정	1	o
초음파 탐상기	10 ~ 120 dBμV	공압누설 탐지	1	
축중량 측정계	15 t	아웃트리거 축하중 측정	4	o
내시경	해상도 320 x 240 픽셀 이상 케이블 길이 1 m 이상	배관 내부 검사	1	
유압유 분석기	계수법에 의한 NAS 청정도 기준 분석 장치	유압유 분석	1	
와이어로프테스터	10,000 lbf	와이어 장력 측정	1	
베어링측정기	0.28 ~ 28.0 mm/sec	진동 측정	1	